

1. 개정이유

대한민국수산물명인 적합성 추천심의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정기준 구체화 및 지정대상 평가항목 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 세분화하고,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를 위해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수산전통식품 심사항목 중 위생 관련 중복 대상 심사항목을 생략하는 등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정대상 평가항목 평가 기준에 대한 배점 기준 세분화 (안 별표2)

- 1) (전통성)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(안 별표 2 제2호가목)
- 2) (정통성) 5년 미만의 기능 전수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(안 별표 2 제2호다목)
- 3) (경력·활동 사항) 10년 미만의 경력 및 활동 실적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(안 별표 2 제2호라목)
- 4) (계승·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)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보유 신청자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설정 (안 별표 2 제2호마목)
- 5) (산업성) 수산식품명인에 지속적 계승·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유사 중복성이 높은 ‘전통성’에 대한 점수를 ‘정통성’ 평점에 준하여 변경하고 산업성에 대한 점수 상향 (안 별표 2 제2호바목)
- 6) (윤리성)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반 사항을 평가 방법에 포함(농식품부 소관 ‘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방법’과 일치) (안 별표 2 제2호사목)

나.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중복 대상 위생 관련 심사항목 생략 (안 별표4)

- 1) 심사평가 항목이 HACCP 인증 항목과 중복되어, 수산 전통식품 신청업체 중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4개 심사 항목(작업장·용수관리·개인위생·환경 위생) 생략

다.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(안 44조제1항 후단 신설)

- 1)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한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「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업표준인증의 사후관리를 조건부로 면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별표 2, 4는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라 인증제품 제조 중단 사유 및 중단기간의 자료를 우수수산물식품등 인증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산물식품 산업표준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사후관리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2 제1호 지정기준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하며, 0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.

별표 2 제2호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항목	분야	지정대상(분야)		평가 (평점)
		수산물전통식품명인 (영 제19조제1호)	일반수산물식품명인 (영 제19조제2호)	
가. 전통성		A. 수산물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	<평가 생략>	20
		B. 수산물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		15

	C. 수산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		10
	D. A~C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	0
나. 우수성	<평가 생략>	A.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최우수상 수상자	25
		B.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우수상 수상자	20
		C.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의 장려상 수상자	15
다. 정통성	A.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3대 이상의 전승기술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		20
	B.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 또는 2대 이상의 전승 기술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		15
	C.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		10
	D.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 부터 5년 미만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		5
라. 경력 및 활동사항	A.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		20
	B.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		15
	C.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		10
	D.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		5

마. 계승·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	A. 해당 기능·기술을 익히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·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. 해당 기능·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·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. 해당 기능·기술을 익히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나, 보호하지 않으면 그 기능·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D. 해당 기능·기술을 익히기가 상대적으로 쉽고, 보유자가 많으며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	25 20 15 0
바. 산업성	A.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·판매·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. 해당 수산식품이 생산·판매·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.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10 7 0
사. 윤리성	1) 수산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서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. 지역주민,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수산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수산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,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. 지역주민,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.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) 「식품위생법」, 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B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C.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	5 2 0 -20

별표 4 제1호 판정기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
업소에 대해서는 제2호나목·바목·사목·아목의 심사를 생략할 수
있으며, 이 경우 평가결과의 합계가 39점 이상이면서 제3호의 항목별
세부 심사항목에서 “C”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일 경우 합격으로
판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(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)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·열람·수거 또는 점검(이하 이 조에서 “조사등”이라 한다)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44조(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라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의 자료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사후관리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